

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

제정 2000. 12. 5 기상청훈령 제354호
개정 2002. 9. 10 기상청훈령 제379호
2003. 4. 3 기상청훈령 제385호
2005. 10. 18 기상청훈령 제435호
2007. 4. 17 기상청훈령 제494호
(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령)
2008. 3. 24 기상청훈령 제538호
(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)
전부개정 2009. 6.29. 기상청훈령 제616호
전부개정 2012. 3.29. 기상청훈령 제718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기상법」 제34조 및 「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」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(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)의 기상정책홍보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②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홍보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2장 기상정책종합홍보계획

제3조(홍보계획의 수립) ①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다음 연도 주요정책(다음 연도 기상청 주요업무에 포함된 정책을 말한다) 수립 시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초까

지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홍보계획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의 목적·대상·내용·추진 방향·추진 일정·이용 홍보매체·예산집행 등과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의 연계 추진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4조(기상정책종합홍보계획의 수립) ① 대변인은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정·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대변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의 기상정책종합홍보계획을 매년 1월 초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제3장 기상정책홍보협의회

제5조(기상정책홍보협의회 구성·운영) ①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기상정책홍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상정책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홍보실적 평가 기준
3.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
1. 내부위원: 기획조정관, 예보국장, 관측기반국장, 기후과학국장, 기

상산업정보화국장, 수치모델관리관, 지진관리관

2. 외부위원: 기상정책홍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대변인이 된다.

④ 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기상정책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·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기상홍보실무단(이하 “실무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실무단 구성·기능) ① 실무단의 단장은 대변인이 되고, 단원은 각 부서(기상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홍보업무 담당자가 된다.

② 실무단원은 사진, 동영상 등의 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해당 부서의 주요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각 부서의 장은 홍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장 언론·온라인 홍보 및 대응

제7조(브리핑 등) ① 각 부서의 장은 추진 중인 주요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인터뷰·언론 기고·브리핑 등을 하여야 한다.

② 각 부서의 장은 브리핑 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상보도자료·도표·그림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정책과 홍보의 연계 등) ① 각 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을 브리핑하고자 할 때에는 대변인과 사전 협의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대변인은 주요정책을 홍보할 경우 언론, 정책포털사이트, 이메일 정책고객서비스,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취재활동 지원) ① 대변인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기상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대변인을 통해서 한다.
2. 사실 확인 및 전문 기술정보는 해당 부서에서 한다.
3. 인터뷰·언론 기고·브리핑 등은 대변인과의 협조를 통해 실시한다. 다만,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.

③ 업무 담당자가 개별적 취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변인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개별적 취재란 특정 사안에

대한 사실 확인·의견 개선·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함한다. 단,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언론 모니터링 등) ① 대변인은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온라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②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, 해당 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수립·시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1조(홍보물 제작) ① 기상청의 인쇄물·영상물 및 정책 광고물(이하 “홍보물”이라 한다)은 기상정책종합홍보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

②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편집 체제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서·연감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경미한 홍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대변인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언론 기획보도 및 홍보물 제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.

제5장 홍보실적 관리

제12조(홍보실적 평가) ① 대변인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국 및 소속기관의 홍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평가는 매 반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되, 평가 기준일(전반기: 6월 30일, 후반기: 12월 31일)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.

③ 평가를 받는 부서나 소속기관은 신문·잡지 기사·방송 내용·온라인 홍보 내용 등의 홍보실적을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대변인은 필요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홍보실적 표창) 대변인은 각 부서별 홍보실적을 평가하여 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.

제6장 홍보교육 및 지원 등

제14조(홍보교육 및 지원) ① 대변인은 실무단원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대변인은 각 국 및 소속기관 간 연계 홍보 활성화 및 홍보추진을 위해 홍보우수사례 발굴·전파,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언론인 강좌) 대변인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상정보의 전달 및 보급을 위하여 기상과 관련된 전문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

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
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
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, 폐지 등의 조치를
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